

## 8. 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림부령 제1,276호 1998. 2. 13

### 주 요 골 자

- 가. 종전에는 보전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3헥타르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접토지와의 합필을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3헥타르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4제8호)
- 나.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를 당해 휴양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휴양림조성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제31조제3항).
- 다.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화장장·납골당 시설을 추가 함으로써 무분별한 묘지 조성으로인한 산림잠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제1항제11호).
- 라. 종전에는 대나무를 벌채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대나무 수요가 감소하여 대나무 벌채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듬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규제를 완화함(제87조제1항제5호).
- 마. 종전에는 분묘로부터 10미터이내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거리를 5미터 이내로 완화함(제90조제1항제5호)

- 바. 종전에는 채석허가시에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근 주민의 동의 또는 공람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석허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제95조제3항).
- 사.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상 상태별 산불예방행동 지침에 산불경보의 발령요건, 경보식별 요령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산불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3).

### 개정이유

임야의 매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대체조림비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산림의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 산림법이 개정(1997. 4. 10, 법률 제5323호)됨에 따라 대체조림비의 환급에 관한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대나무”를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용축액을 포함한다)”로, “생엽”을 “꽃·생엽”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액(수목을 태워서 얻는 용축액을 포함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영림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산림소유자·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협업영림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일반영림계획 인가신청서에 영림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영림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영림계획서상의 산림 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영림계획에 시행령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3. 사업계획이 영림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③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계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시행령 제11조 단서”를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로, “각호(제6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를 “각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4호(종전의 제3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시험림
2.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공익임지안의 산림(휴양림을 제외한다.)
3.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

호구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산림  
제9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영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의하여”를 “영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9조의7 내지 제9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13제2항제3호중 “나목”을 각각 “나목·다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본문중 “20일”을 “7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6천분의 1 임야도)”를 “(축척 6천분의 1 임야도)”로 한다.

제10조의2중 “(6천분의 1 임야도)”를 “(축척 6천분의 1 임야도)”로, “20일”을 “7일”로 한다.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보전임지 전용 허가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 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0일 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1부

####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제2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중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자목 및 동항 제2호 마목”을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파목 및 동항 제2호 바목”으로 하고, 동항 제1호는 삭제하며, 동항 제3호중 “50제곱미터미만”을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동항 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5호중 “지역주민이”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사도법에 의한 사도

#### 7. 야생동물 이동 통로 등 조수보호를 위한 시설

제19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만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것.

2.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자목 및 동항 제2호 다목의 종교시설은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의 개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 범위내로 하며, 증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의 100퍼센트내로 할 것

③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농림어업관련 대체조립비 면제 대상범위)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제1호

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어가 주택의 건축 및 그 부재시설의 설치
2.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3. 농로의 설치
4. 임산물의 생산·가공 등 영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 가. 야생조수 사육시설
  - 나. 축산시설
  - 다. 누에사육시설
  - 라. 버섯재배시설
  - 마. 농업용 고정식온실
  - 바.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사. 양어장·양식장 및 낚시터 시설
  - 아.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 자.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제19조의4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접토지와의 합필을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

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의5중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 산림의 전용현황과 대체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13의 제목 “(대체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의 과오납금 반환)”을 “(대체조림비의 환급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시행령 제2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 납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를 “법 제20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조림비 또는 전용 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 “과오납금 반환 신청서”를 “청구서”로 하며, 동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반환신청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 반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 14서식의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를 “대체조림비 환급 등의 신청을 받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통지서”로, “과오납금반환 입금의뢰”를 “대체조림비 환급금 등의 입금의뢰”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과오납금 반환 입금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반 환하고 별지 제20호의 16서식의 과오납금 반환필통지서”를 “대체조림비 환급금 등의

입금의뢰를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지급하고, 별지 제20호의 16서식의 환급금 등의 지급필통지서”로 한다.

제19조의14제2항중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이하 “임업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산림의 개발과 임업진흥”을 “산림의 개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대부승낙서”를 “대부계약서”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당해 휴양림의 소재재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를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휴양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의 제목중 “입장료등”을 “입장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정수기준”을 “법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의 정수기준”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의4제2항중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기념식수 및 협업조림의 장려)”를 “(기념식수의 장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6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4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로 한다.

제39조제5항중 “1헥타르이하”를 “1헥타르미만”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 제5호중 “흉고직경”을 “가스높이지름”으로 한다.

6. 전나무

7. 참나무류

제42조의3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법 제53

조제5항”을 각각 “법 제53조제6항”으로 한다.

제42조의4의 제목 “(임산물의 판매금지·폐기명령등)”을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을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 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제43조의3(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발급 등)** ①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를 포함한다) 1부

2. 목구조기술자 양성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필증 1부

3. 증명사진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13제4항 및 제9조의14의 규정은 목구조 기술자의 자격증발급대장의 비치·기록, 자격증 발급 상황의 보고, 자격증 재발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하고,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수필증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43조의4(목구조기술자 양성과정의 과목**

등) ①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 관리 기술자의 교육과목은 건축법개론·목재이학·목재구조학 및 경영학으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교육 과목은 목재이학·목구조시공이론 및 목구조시공 실습으로 한다.

②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 관리 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4주 이상 8주 이하로 하고, 목구조 시공 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2주 이상 8주 이하로 한다.

③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 관리과정 및 목구조 시공과정을 이수한 목구조 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 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 관리 및 감독업무

2.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 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 업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교육 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의5(목구조기술자의 보수교육) 제9조의4의 규정은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구조 기술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림기술자”는 “목구조기술자”로, “임업연수기관”은 “목구조기술자 양성기관”으로 본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지방산림관리청장이 국유림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6조 본문중 “20일”을 “7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4항중 “산림계”를 각각 “임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 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중 “산림계는”을 “임업협동조합은”으로 하고,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방목여부”를 “방목 또는 임산물의 무상양여여부”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중 “(6,000분의 1 실측도 또는 1,200분의 1 구분구적도)”를 “(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로 하고, 동항 제5호중 “초지 조성허가서 1부”를 “초지조성허가서 사본 1부”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종축업등록증 사본 1부(종축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림청장이 국유림의 대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대부계약서에

의하고,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의2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중 “연장”을 각각 “갱신”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중 “산화”를 “산불”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산업의 범위)”를 “(산업시설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0조제1항제4호중 “야생조수인공사육시설”을 “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 · 수렵강습시설”로 하고,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화장장 · 납골당 시설

제60조제2항중 “양어장 및 야생조수인공사육시설”을 “양어장, 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 수렵강습시설”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허가신청서”를 “신청

서”로, “산림청장”을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산림청장”을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 1부

제64조 각호외의 부분의 본문중 “산림청장”을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경사 및 평면적과 사면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를 “경사도 및 사방공법 등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구비의 예치통지는 별지 제72호의8서식에 의한다.

제75조제2항 단서중 “토석채취허가기간”을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기간”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1할을” “100분의 5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2할을”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동항 제3호중 “3항을”을 “100분의 15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의 후단중 “허가기간”을 “매각 또는 무상상여기간”으로 하며, 동항 제1호 중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을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으로 하고, 동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온이 복구를 위한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복구비를 계속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승계인이 예치한 복구비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복구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의2제1항 본문중 “다른 법령”을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법지 제73호의4서식”을 “별지 제72호의9서식”으로 하고, 동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본문중 “실측도”를 각각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수재배 또는 관상수생산목적의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헥타르 이상인 국유림

제81조의3의 제목 “(분수림설정과수의 종류)”를 “(분수림 설정과수 및 관상수의 종류)”로 하고, 동조 본문중 “참다래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과수로 한다”를 “참다래로 하고, 관상수는 주목·동백나무·축백나무·편백·향나무·회양목·목련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목으로 한다”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식재수종”을 “조림 또는

식재수종”으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제4호중 “무육간벌”을 “간벌”로 하고, 동항 제5호중 ”대나무·오동나무“를 ”오동나무“로 하며, 동항 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11호중 ”농업인등“을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 ”지름“을 ”지름이“로 하며, 동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측량법에 의한 측량의 실시를 위한 벌채

### 14.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간 50세제곱미터이내의 벌채

제8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제8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형질변경임지 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 3.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

### 4. 인근지역의 피해발생여부

제8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72호의7서식의 취소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8조의3의 제목중 “형질변경 허가지”를 “형질변경지”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중 “형질변경 허가지”를 “형질변경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을 “복구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복구연기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형질변경 허가지의 일부에 대하여”를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형질변경 신고를 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형질변경지의 일부에 대하여”로 하며, 동조 제4항중 “형질변경 허가지”를 “형질 변경지”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형질변경허가기간”을 “형질변경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를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형질변경기간 만료 10일 전에”로 하며, 동조 제3항중 “허가증”을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시설위치의 변경) 산림의 형질변경 구역 안에서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6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설계변경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 변경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로 된 때 또는 군사시설·공용사업·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제1항제2호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를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이”로 하고, 동항 제5호중 “10미터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5미터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항 제6호 단서중 “전용허가·동의”를 “전용허가”로 한다.

제90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은”으로, “제 한지역을”을 “제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중 “임도”를 “임도(유실수 재배지 안의 작업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형질변경구역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를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로, “운재로”를 “유실수재배지 안의 작업로”로 하며, 동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사업계획서 1부

## 4. 복구설계서 1부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의 예치 등)

①제75조의 규정은 복구비용의 예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별지 제72호의8서식의 예치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복구비용을 신설한다.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복구 설계서에 대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구 설계서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형질변경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에게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그 복구 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의 시행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변경 설계서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구 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한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2조의3(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9 서식의 산림형질 변경지 복구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 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적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임지실측도(대한 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복구의무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면적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복구의무 면제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한 복구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복구비용의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취·채취 예정 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
2.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94조의 제목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등)”을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2호중 “금지 또는 제한된”을 “제한된”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임지의 경우”를 “임지의 경우(병해충을 구제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지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육림작업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제9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90조제2항제8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2.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 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채취하는 경우
3.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종자를 제외한다)·버섯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4. 대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채취하는 경우

제95조제1항제5호중 “채석시설”을 “채석용 시설·장비보유현황”으로 하고, 동항 제6호 중 “쇄골재용”을 “골재용”으로 하며, 동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본문중 “복구비를”을 “복구비용을”로 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조사·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인근 주민의 동의
2. 인근 주민에의 공람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 신청내용

2. 허가 신청지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  
만5천분의 1의 도면

3. 인근 주민의 의견제시 방법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허가여부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을 제시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5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제6호의 서류를”를 “제6호의 서류”로 하며, 동항 제4호중 “제92조제2항”을 “법 제91조제1항”으로, “복구비”를 “복구비용”으로 하고, 동항 제5호중 “쇄골재용”을 “골재용”으로 한다.

제9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의4(채석지 복구기간의 연장) 제75 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90 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5조의5 및 제95조의6을 각각 제95조의7 및 제95조의8로 하고, 제95조의5 및 제95 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5(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법 제90조의2제9항 제2호에서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라 함은 자연석외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5조의6(토사채취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법 제90조의2제9항제3호에 서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라 함은 자연석외의 석재 또는 지하암반외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5조의8(종전의 제95조의6)의 제목 “(채석장의 재해발생방지)”를 “(채석장의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등)”으로 하고, 동조 제1 항중 “산림의 재해발생 방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방지를 위한”을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채석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재해발생방지”를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96조 본문중 “법 제90조의4제5항”을 “법 제90조의4제6항”으로, “산림청장이”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행령 제9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중단 등 명령의 이행에 관한

## 사항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시행령 제9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91조의5제5항 각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2. 신청 대상지의 위치가 표시된 축척 5만분의 1지도 및 축척 6천분의 1의 분포도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서류

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서

③시행령 제9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된 것”이라 함은 제9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것을 말한다.

제97조의2의 제목 “(채석단지의 관리)”를 “(채석단지의 관리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는 시행령 제91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채석단지운영 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 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의6을 삭제한다.

제97조의4 및 제97조의5를 각각 제97조의6 및 제97조의9로 한다.

제97조의4 및 제9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4(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4호의5서식의 채석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석구역실측도 1부

2. 채석 수량에 대한 구적도 1부(채석 타당성 평가에 의한 채석 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이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석구역현황·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 생  
산·이용 및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  
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  
장·군수는 별지 제74호의6 서식의 채석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78조·제95조제7항 및 제95조의2제1  
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채석구역의 표  
지, 채석 신고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하  
거나 채석신고 사항중 경미한 사항에 대  
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  
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제에 의한 채석신고 기간의  
연장신청을 받거나 채석신고 사항의 변  
경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74  
호의6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제97조의5(채석신고기간의 기준) 법 제90  
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기간  
의 결정 기준은 별표9와 같다.

제97조의6(종전의 제97조의4)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 안에서의 토사채취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산림 소유자 또는 산림  
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7조의6(종전의 제97조의4)제1항제5호중  
“토사채취시설”을 “토사채취용시설·장비  
보유현황”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  
사채취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97조의6(종전의 제97조의4)제2항 각호외  
의 부분의 본문중 “법 제90조의2제7항”을  
“법 제90조의6제4항”으로, “복구비를 예치  
하게 하고 별지 제76호의2서식”을 “복구비  
용을 예치하게 하고 별지 제75호의2서식”  
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시행령 제91조의  
7제1항”을 “시행령 제91조의7”로 하며, 동  
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조사·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7조의6(종전의 제97조의4)제5항(종전의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7항(종전의 제6항)중 “법 제90조제1항 단서”를 “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허가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7조의7 및 제97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7(토사채취신고 등) ① 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

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자가 소비용으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적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토사채취구역 실측도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74호의7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78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토사채취구역의 표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7조의8(토사채취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95조의2의 규정은 법 제90조의6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8조를 삭제한다.

제9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의 제목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

지등 신고)"를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신고서"를 "허가신청서"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신고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에게 그 신고상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에게 그 허가상황"으로 한다.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3을 각각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으로 하과, 제103조의2 내지 제10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3조의2(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 · 해제)** ①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은 법 제1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안에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등산로 등 입산자의 왕래가 많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2. 자연 휴양림 또는 임간수련장 등으로

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천연보호림 · 채종림 또는 시험림 등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정화보고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산이름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해제사유

**제103조의3(기상 상태별 산불예방 행동 지침)** 법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 상태별 산불예방 행동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불경보별 발령요건
2. 경보식별요령
3.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제103조의4(산불관리통합지침)**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불관리 통합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에 관한 사항

- 3.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 4. 산불방지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5. 산불신고 및 진화체계에 관한 사항
  - 6. 산불진화관련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7. 산불피해보고 등에 관한 사항
- 제103조의59종 전의      제103조의2)제1항중  
“법 제102조의2”를 “법 제102조의3”으로  
한다.

제10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 · 도지사가 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구제 · 예방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의 명령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을 각각 삭제한  
다.

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6장(제105조의4  
내지 제105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 기술연구개발

### 제105조의4(공동연구 개발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  
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 · 신청기간
3. 기타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5조의5(출연금의 지급 · 관리)  
 ①산  
림청장은 시행령 제108조의5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 차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  
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  
개발의 연구 책임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5조의6(사용계약의 신청) 시행령 제  
108조의6 및 제10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  
증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  
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  
서 1부
  - 가. 사업계획의 개요
  - 나. 사업계획의 내용
    -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94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  
서(시행령 제108조의6 단서 및 제108조

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제105조의7(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 성과등에 관한 사용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다)
3. 기술 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 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105조의8(기술사용료 산정방법) 시행령 제10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술 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 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
2. 공동연구개발성과 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

조제2항·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할 것

제105조의9(기술사용료 납부방법) 제105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제2항중 “현지조사를 하게 하고”를 “별지 제86호 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로 한다.

제07조를 삭제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과태료 징수절차)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은 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 나목중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로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구

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채석허가면적을 제외한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하되,”로 하고, 동표 제2호 나목중 “7,400세제곱미터 이상”을 “7,400세제곱미터 이상(오석의 경우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2를 삭제한다.

별표 10의 제목중 “종·묘판매업자”를 “종·묘생산업자”로 하고, 동표 위반사항란 제1호중 “종·묘판매업”을 “종·묘생산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3월”을 “60일”로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중 “임도”를 각각 “산림 토목”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의 제1조중 “일변 7전의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그 실제 연체일수 1일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서식의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기납된 대금 및 국유림안의 토석은 국가에 귀속하고, 예납된 복구비는 복구를 완료한 후에 반환한다. 다만, 토석을 매각받은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납된 대금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별지 제74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중 “채석구역현황, 채석방법 및 채석시설”을 “채석구역현황·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장비보유현황”으로 하고, 동란 제6호중 “쇄골재용”을 “골재용”으로 한다.

별지 제87호서식중 “제103조의2제1항”을 “제103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5호의6서식의 앞면·별지 제5호의7서식·별지 제5호의9서식·별지 제6호 서식의 앞면·별지 제17호서식의 앞면·별지 제18호의2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의3서식·별지 제20호의 13서식·별지 제20호의14서식·별지 제20호의15서식·별지 제20호의16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6호의2서식·별지 제47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5호서식·별지 제67호서식의 앞면·별지 제68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69호의2서식의 앞면·별지 제70호서식·별지 제70호의2서식·별지 제71호서식·별지 제71호의2서식·별지 제72호서식·별지 제72호의2서식·별지 제72호

의3서식·별지 제73호서식·별지 제73호의2서식·별지 제73호의3서식·별지 제73호의4서식·별지 제74호의2서식·별지 제74호의3서식·별지 제75호서식·별지 제75호의2서식·별지 제75호의3서식·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20호의2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38호의4서식·별지 제72호의4서식·별지 제72호의5서식·별지 제76호서식·별지 제77호서식·별지 제77호의2서식·별지 제78호의2서식의 뒷면·별지 제88호서식·별지 제89호서식·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4서식·별지 제2호의5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7호의2서식·별지 제37호의3서식·별지 제37호의4서식·별지 제37호의5서식·별지 제48호의2서식·별지 제72호의6서식·제72호의7서식·제72호의8서식·제72호의9서식·제74호의4서식·제74호의5서식·제74호의6서식·제74호의7서식·제74호의8서식·제75호의4서식·제82호의3서식

· 제92호서식·별지 제93호서식 및 별지 제9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구비예치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제92조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복구비예치액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대부대계약, 토석매매계약, 토석매각대금의 결정, 분수령설정계약,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휴양림 입장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휴양림 입장료 등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